

## 교육대학원 부전공 자격검정에 관한 내규

**제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)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의 중등학교 교원자격(부전공 자격) 무시험 검정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검정대상)** 중등학교 현직 교사로서 본 대학원 교과과정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(졸업예정자 포함)이어야 한다.

**제3조 (관련 전공 및 기본이수과목)** ① 부전공 관련 전공은 국어교육, 영어교육, 컴퓨터 교육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② 기본이수과목은 5개 과목(14학점)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과목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
**제4조 (신청서류)**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
2. 성적증명서(대학원) 1부
3. 재직증명서 1부

**제5조 (부전공 과목표시)** ① 주전공 자격증에 부전공 해당 과목을 표시한다.

② 부전공 과목의 표시는 동일 자격종별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③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자격부여는 준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자는 준교사 자격증에, 2급 또는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2급 자격증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.

**제6조 (검정방법)** 무시험검정은 제7조 각 항의 검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시행하되 매 학기 졸업전 30일 이내에 시행한다.

**제7조 (검정기준)** ① 본 대학원 재학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21학점 이상(기본이수영역 14학점 포함)취득 한 자

②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은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대학원의 표시과목 관련전공 과목으로 한다.

③ 실기교사, 양호교사, 초등학교교사, 유치원교사 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.

**제8조 (자격증의 표시방법)** 각 전공별 중등학교 부전공 자격증에 기재할 표시과목은 다음과 같다.

교육대학원 부전공 자격검정에 관한 내규

전 공	표 시 과 목
국어교육	국어
영어교육	영어
컴퓨터교육	정보·컴퓨터

제9조 (명부작성 및 서류제출) 부전공 자격증이 발급되면 별표 3의 양식에 의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